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함
- 지원내용
 -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5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지급(100만원 일시금)
 - 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 지급(120만원 분할지급, 월10만원 12회)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아동복지과 ☎ 281-2023



> 출산지원금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내용

| 출산순서 | 지원내용 | |
|---------|---------|------------------------------------|
| | 지금액 | 지원시 기 |
| 첫째아 | 100만원 | 일시금 |
| 둘째아 | 200만원 | 일시금 |
| 셋째아 | 400만원 | 태어난 해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 넷째아 | 600만원 | 태어난 해 3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 다섯째아 이상 | 1,500만원 | 태어난 해 500만원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둘째아 이상 분할지급대상자는 첫째 장려금 지급 후 매해마다 1년 후 지급

지원내용

- ▶ 첫째아 100만원
- ▶ 둘째아 200만원 (태어난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 셋째아 300만원 (태어난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 넷째아 500만원 (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태어난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문의

여성가족과 ☎ 859-5331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 +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 하지 않음.

신청방법

- + 거주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상담 및 신청문의

- + 보건소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063-539-6753)

피어나다 남김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현재 1년미만 거주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기준

-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우리시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
|-------|---|
| 첫째아 | 200만원(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
| 둘째아 | 500만원(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셋째아 | 1,000만원(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 넷째아이상 | 2,000만원(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

※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1년경과 후 신청자는 1년 경과월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제외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
(계속거주 확인대상 : 신생아, 부 또는 모, 둘째이상은 형제자매)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김제시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자녀 및 부모 모두가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매년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전입한 날이 속한 월에 분할지급함.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1세 미만이어야 함.

지원내용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 포함한 금액

| 구분 | 지원금액 |
|---------|---|
| 첫째아 | 1,000만원 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200만원(첫만남바우처) |
| 둘째아 | 1,600만원 최초 신청 시 2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3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셋째아 |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넷째아 | 2,0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다섯째아 이상 | 2,1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45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 300만원(첫만남바우처) |

※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기간 동안 자녀 및 부모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됨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출산통합서비스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1, 1323)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신청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 !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 출생순위 | 지원금액 | 비 고(2024년 출생아부터) |
|--------|-------|-------------------------------------|
| 첫째아 | 200만원 |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 둘째아 | 300만원 | 100만원씩 3년간 지급 |
| 셋째아 이상 | 600만원 | 태어난 해 200만원지급, 1년 경과시 100만원씩 4년간 지급 |

- ! 부모 및 출생아 타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 신청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지원내용

| 구 분 | 신청 첫달 | 신청 12개월째 | 신청 24개월째 | 신청 36개월째 |
|--------------|-------|----------|----------|----------|
| 첫째아(300만원) | 100 | 50 | 50 | 100 |
| 둘째아(500만원) | 150 | 100 | 100 | 150 |
| 셋째아(1,000만원) | 300 | 300 | 200 | 200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팀(모자보건실) ☎ 063-430-8539, 85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
- 신청기한 : 출생 후 1년 미만까지 읍·면에 신청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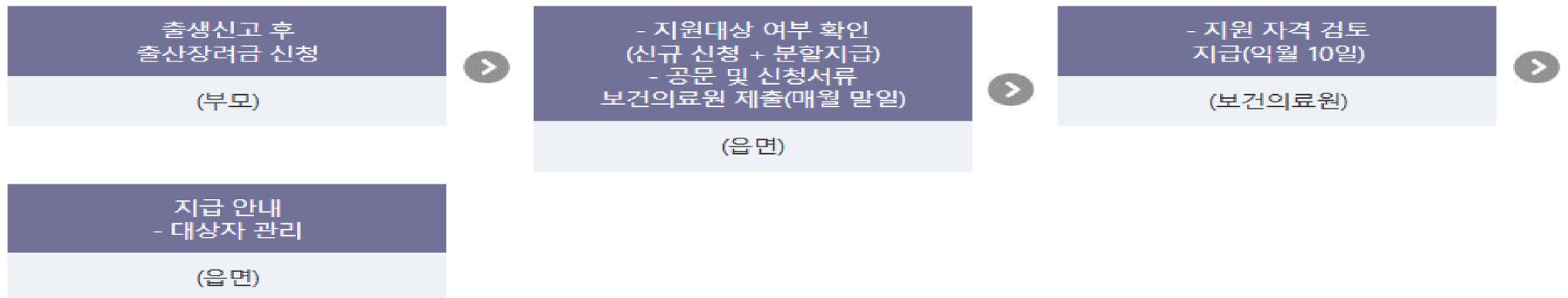
- 출산장려금 : 출생아 순위별 차등지급
(※ 자녀가 쌍생아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

| 구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 이상 |
|-----|---------------------------------|---------------------------------|--|-----------------------------------|-----------------------------------|
| 지원액 | 400만원 (매월 20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600만원 (매월 30만원씩 20회 분할지급) | 1,000만원 (매월 33만원씩 30회 분할지급, 첫 달만 43만원 지급) | 1,200만원 (매월 4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1,500만원 (매월 50만원씩 30회 분할지급) |

▶ 신청서류

- 출산금부통합처리신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처리절차



▶ 문의

-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읍·면 맞춤형복지팀 출산장려금 담당공무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 지원대상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 첫째아 300만원(신청시 150만원, 1년후 150만원)
- + 둘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 셋째아 500만원(신청시 250만원, 1년후 250만원)
- + 넷째아 이상 800만원(신청시 400만원, 1년후 400만원)

◉ 지원절차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640-4664),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자

> 지원시기

- 읍·면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출산 축하금, 양육비, 다자녀가정 특별출산장려금 지원

| 구분 | 출산축하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 총지원액 | 비고 |
|--------|---------|--------------------|---------|----------|----|
| 첫째아 | 600천원 | 2,400천원 (200×12개월) | - | 3,000천원 | |
| 둘째아 | 600천원 | 4,000천원 (200×20개월) | - | 4,600천원 | |
| 셋째아 | 1,000천원 | 6,000천원 (200×30개월) | 3,000천원 | 10,000천원 | |
| 넷째아 이상 | 1,000천원 | 9,000천원 (300×30개월) | 5,000천원 | 15,000천원 | |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1부

> 문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 063-650-5212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 지원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체계

◆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재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울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 지원체계

◆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재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울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금(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업무흐름도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 지원내용
 - 첫째아 : 300만원(4회 분할 지급)
 -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 지원내용 : 144만원(5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에 하고 출산(입양)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 (부모인 경우 부 또는 모 1인)
- 지원내용 : 400만원(4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